

서울특별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 의견청취안

의안 번호	1396
----------	------

제출연월일: 2020년 4월 1일
제 출 자: 서울특별시교육감

1.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의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 현황

구분	규모(㎡)	총계(건)	재정비(안)		비고
			존치	해제가능	
학교	329,720.5	29	29	-	

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 단계별 집행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총계		1단계		1,2단계		2단계	
학교	29	1,869,072	7	365,855	10	565,462	12	937,755

3.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별첨 1]

4. 참고사항: 관련법령 [별첨2]

< 별첨 1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 현황

연번	위치	면적(m ²)	결정고시일	재정비(안)	단계 별 집행계획
1	강동구 강일동 120-4 일원	12,000.0	2012-12-21	존치	1단계
2	강동구 강일동 121-3 일원	13,000.0	2012-12-21	존치	1단계
3	송파구 거여동 산49	10,334.0	2010-11-03	존치	1단계
4	송파구 거여동 산50	11,222.0	2010-11-03	존치	1단계
5	중랑구 망우동 306-37	10,780.0	2011-11-11	존치	1단계
6	강남구 자곡동 102 일원	10,624.0	2018-01-09	존치	1단계
7	강동구 둔촌동 180-1일원	16,124.9	2006-11-02	존치	1·2단계
8	강남구 일원동 737(산 63-1)	12,291.6	1990-02-02	존치	1단계
9	송파구 장지동 17	11,030.0	2010-11-03	존치	1·2단계
10	강동구 강일동 산 22-101 일원	11,194.0	2012-12-21	존치	1·2단계
11	동작구 흑석동 60 일대	14,047.0	2008-09-11	존치	2단계
12	강남구 개포동 산156-2일원(567-1)	9,877.0	2016-12-08	존치	2단계
13	서초구 잠원동 71-10	11,608.0	1986-05-17	존치	1·2단계
14	서초구 잠원동 61-6, 18	10,556.1	1986-05-17	존치	1·2단계
15	송파구 마천동 613(267-14)	6,903.0	2005-12-29	존치	1·2단계
16	노원구 하계동 256-1	10,933.0	1989-09-26	존치	1·2단계
17	서초구 방배동 974-3	8,112.0	2010-09-02	존치	2단계
18	은평구 진관동 246-5	10,223.1	2006-12-28	존치	1·2단계
19	강동구 강일동 53-1 일원	12,000.0	2012-12-21	존치	1·2단계
20	강동구 강일동 473-4	11,000.0	2012-12-22	존치	1·2단계
21	은평구 갈현동 285-241	7,752.0	2011-09-29	존치	2단계
22	서대문구 북아현동 544	9,069.0	2008-02-05	존치	2단계
23	동대문구 이문동 87-14	8,000.0	2008-01-07	존치	2단계
24	강북구 미아동 438	12,027.0	2010-03-18	존치	2단계
25	강남구 압구정동 423,424	14,999.8	1981-07-07	존치	2단계
26	서대문구 북가좌동 80-36	7,438.0	2007-04-12	존치	2단계
27	서초구 반포동 1300 일대	12,277.0	2017-04-27	존치	2단계
28	서초구 반포동 1305 일대	10,615.0	2017-04-27	존치	2단계
29	송파구 마천동 223	23,683.0	2008-09-11	존치	2단계
합 계		329,720.5			

관계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8. 20.] [법률 제16492호, 2019. 8. 20., 일부개정]

- 제8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할 수 있다.
- ③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⑤ 공고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11. 7.] [대통령령 제30031호, 2019. 8. 6., 일부개정]

제9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법 제8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매년 법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단계집행계획을 검토하여 3년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도시·군계획시설은 이를 제1단계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④ 법 제85조제4항에 따른 단계별집행계획의 공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며, 필요한 경우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⑤ 법 제8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25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단계별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